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-85호

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던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(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-59호)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16년 10월 24일

우정사업본부장

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 폐지에 관한 공고

1. 폐지사유

- 민간업체의 통상우편 시장잠식을 차단하고 통상우편물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입하였으나 시험운영에 대한 분석결과 시장이탈 가능성이 낮고 그 이용량이 저조함에 따라 폐지함

2. 폐지 대상

-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

3. 폐지 일자 : 2017년 1월 1일